서울특별시 미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4. 2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4. 13., 김진천 의원 외 5명

나. 회부일자 : 2020. 4. 13.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4. 2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김진천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 발생한 이후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어서 마포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의료인 및 구민의 책무와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5조)

- 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 마.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 바. 정기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2조)
- 아.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강제처분 입원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안 제15조)
- 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과 방역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안 제18조)
- 차. 소독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안 제 20조~안 제21조)
- 타. 의료기관 경영자 및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 파. 교육,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23조~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0. 4. 13.~ 4. 17.(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신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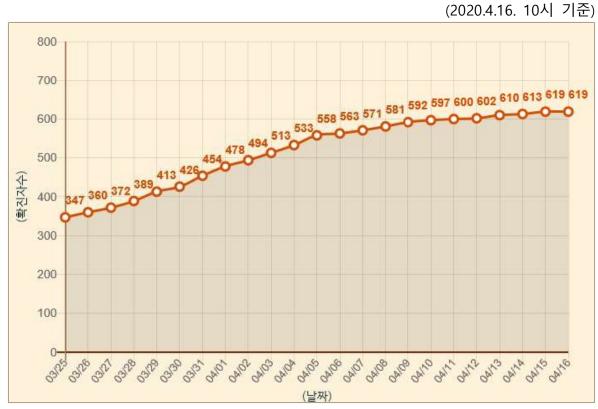
1)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최근 신·변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5)으로

⁵⁾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인하여 확진 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격리 조 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중앙정부의 대응으로는 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이에 따른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음.



<표.1 서울시 누진 확진자 추이(기간 : 2020.3.25.~4.16)>⁶⁾

2) 주요 조문 검토

조례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24개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구청장, 의료인, 구민 등의 책무와 권리
및 의무사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역학조사, 소독의

⁶⁾ 서울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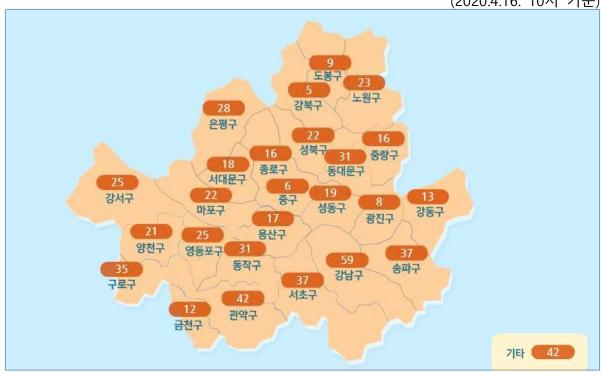
무 사항, 정기예방접종, 자원봉사 활동 사항, 감염병관리기관 설치에서 감염병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 로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문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예방접종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됨.

3) 종합 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경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국내로 유입·확산되어 구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20.4.16. 10시 기준)



<표.2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자치구별)>7)

- 금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방역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ㅇ 이번 위기를 교혼삼아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을 방지하 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의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앞으로 구에서는 조문별 실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⁷⁾ 서울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coronaV/coronaStatus.do 참고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 타 : 없 음